

## 한국자동차공학회 2026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

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우리학회에서는 정관 제15조 및 임원선출·선임규정에 따라 2026년도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.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**2026년도 회장은 우리학회 임원선출·선임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계소속에서 선출됩니다.**

### 1. 회장 및 부회장 정수

- 1) 회 장 : 1명 (연구계 소속)
- 2) 부회장 : 13명
  - 학계 소속 6명 (2~3년제 대학 소속 1명 포함)
  - 산업계·연구계 소속 5명 (부품업체, 연구계 소속 각 1명 포함)
  - 지회 1명
  - 여성위원회 1명

#### [임원 선출·선임규정] 제6조 (부회장의 정수)

- ① 부회장은 13명으로 하며, 학계 소속 6명 이내, 산업계·연구계 소속 6명 이내, 소속과 무관한 지회 1명, 여성위원회 1명으로 한다.

#### \*부회장 정수에 대한 2025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

회장직 순환 구조를 고려하여, 당해 연도 회장의 소속 분야와 다른 분야로 가변석 1석을 배정한다.

### 2. 입후보자 자격

- 1) 회 장 :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연구계 소속 종신회원
- 2) 부회장 : 학회 부회장, 이사, 지회장 또는 부문회장을 역임하고 학회 기여도가 큰 종신회원

### 3.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

- 1) 제출서류
  - 등록신청서 1부 (소정양식)
  - 이력서 1부 (소정양식, 2매 이내, 사진포함)
  - 소견서 1부 (소정양식, 2매 이내)
- 2) 접수기간 : 8.18(월) 09:00 ~ 9.5(금) 18:00까지

#### 4. 제출방법 및 제출처

- 1) 제출방법 : 이메일
- 2) 제출 및 문의 : 한국자동차공학회 서윤주 국장 (T. 02-564-3971, e-mail. auto@ksae.org)

#### 5. 선출일정

일정	내용	내용
8.18(월)	· 2026년도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공고	· 평의원회 개최 43일전 · 임원선출 · 선임규정 제4조 제1항
9.5(금)	· 2026년도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마감	· 평의원회 개최 25일전 · 임원선출 · 선임규정 제4조 제1항
9.12(금)	·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지 · 입후보자 평의원에게 통보	· 평의원회 개최 18일전 · 임원선출 · 선임규정 제4조 제2항
9.18(목)	· 입후보자 등록 보고 (9월 이사회)	-
9.30(화)	· 2026년도 회장단 선출	· 정기총회 개최 45일전 · 정관 제15조 제1항

#### 6. 선출방법

- 2025년도 평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
-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임원 인준

#### 7. 관련규정

- 정관 제11조 ~ 제15조
- 임원선출·선임규정

#### 8. 기타사항

- 1) 회장은 중임이 불가합니다.
- 2) 학계소속 부회장은 최대 3년간 연임할 수 있으며, 이후 중임도 가능합니다.  
(산업계 및 연구계 연임제한 없음)
- 3) 학계와 연구계 소속 회장 및 부회장은 소속기관의 정년퇴직일 이내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.
- 4)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임기 중에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
- 5) 입후보 등록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6)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불가합니다.
- 7) 입후보자를 열거하는 기표번호 순서는 등록신청 접수순으로 부여합니다.
- 8) 투표는 입후보자 전원이 열거된 투표용지 또는 전자적 방법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

**자동차공학은 한국의 힘 !**

**\* 선거 관련 주의사항**

- 1)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인 9월 12일(금)부터 선거일 전일인 9월 29일(월) 18:00까지로 한다.
- 2)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, 선거운동은 회원으로서 품위유지와 학회의 위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.
- 3) 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아래 내용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후보자 및 선거권자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①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  - ②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- 4) 위의 사항 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.

- 참고 1.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
2. 이력서  
3. 소견서

**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**